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능) ①(생략)	제3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 ~ 2(생략)	1 ~ 2(현행과 같음)
3. <u>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u>	3. <u>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u>
4 ~ 5(생략)	4 ~ 5(현행과 같음)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가. 제안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5. 3. 17

다. 상정일자 : 95. 3. 24

라. 의결일자 : 95. 3.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사회과장

나. 내 용

○ 사회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없 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 음

나. 찬성토론 : 없 음

5. 수정안 내용 : 없 음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7
의 결	95. 3. 28
년 월 일	(제36회)

제출년월일 : 95. 3. 17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구 직제개편으로 구의 사회산업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직제개편되었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급자

○ 사회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안 제10조제4항)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사회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기금운용관)①~③(생략) ④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u>사회산업과장</u> , 분임출납공무원은 구의 <u>사회계장</u> 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①~③(현행과 같음) ④..... <u>사회복지과장</u> ,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 가. 제안자 : 부천시장
- 나. 회부일자 : 95. 3. 17
- 다. 상정일자 : 95. 3. 24
- 라. 의결일자 : 95. 3. 24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사회과장
- 나. 내용